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6-36호
2026. 7. 31.(금)

차 례

고 시(1)

- 도시계획시설((주)장원식품 도축장 증축공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고시 제2026-62호)
1

공 고(4)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공고 제2026-845호) 1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공고 제2026-846호) 1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848호) 1
- 「제11회 대덕구민대상」 수상 후보자 공모(공고 제2026-849호) 1

공 람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미디어홍보과 ☎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도시계획시설((주)장원식품 도축장 증축공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5-60 외 5필지 상 도시계획시설사업((주)장원식품 도축장 증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다 음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5-60번지 외 5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장원식품 도축장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부지면적: 8,642㎡
- 건축연면적: 당초) 4,965.093㎡
변경) 5,032.493㎡ (증 67.4㎡)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명: 주식회사 장원식품 대표이사 김양수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5-6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2014. 8. 30.
- 변경: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2027.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해당없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관계도서

게재생략(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끝.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6년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안)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대덕구 세정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5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열 람

- 기 간: 2026년 8월 5일 ~ 8월 24일
- 장 소: 대덕구 세정과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토지 · 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2026년 8월 5일 ~ 8월 24일
- 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대덕구 세정과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및 인터넷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26.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 ·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2026. 6. 1. 기준으로 주택특성 조사를 하고, 한국 부동산원 2인의 검증으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대덕구 세정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 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의견제출인

→

접수

→

한국부동산원
검증

→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수집항목)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집·이용 목적)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정보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간 보존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제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만 14세 미만 아동과 법정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 등으로 가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에 해당되며(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후견인 지정은 관련 법률(민법 제931조, 제932조)에 따릅니다.
- 첨부한 자료로 법정대리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26. 6. 1.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열 랐

- 기 간: 2026년 8월 5일 ~ 8월 24일
- 장 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 용: 2026.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2026년 8월 5일 ~ 8월 24일
- 제출사항: 2026년 6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사·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6년 9월 30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6년 10월 9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2026. 6.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동주택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은

- 2026. 8. 5. ~ 8. 24.(20일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2026.9.30. ~ 10.9.)
- 서 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2026.9.30. ~ 10.9.)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공동주택	소재지 및 지번		
	명칭(단지명)		
	동명	호명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열람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접 수	검 토
공동주택가격 재조사		결 재
		처리결과 통보
의견제출인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수집항목)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집·이용 목적)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정보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간 보존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제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만 14세 미만 아동과 법정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 등으로 가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에 해당되며(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후견인 지정은 관련 법률(민법 제931조, 제932조)에 따릅니다.
- 첨부한 자료로 법정대리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 취하서

의견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공동 주택	소재지 및 지번			
	명 칭			
	동 호 수			
취하 사유				
위 의견제출인은 _____년도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인 또는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848호

1.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된 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 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3.

2026년 7월 31일

4.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5.

- 1. 공고기간: 2026. 7. 31. ~ 2026. 8. 14.
-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위반사항	처분 내용
일반음식점	전주뽕이모네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31 (오정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4. 7. 1.	직권말소

-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14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6903. 끝.

「제11회 대덕구민대상」 수상 후보자 공모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선행과 봉사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발굴 시상하고자『제11회 대덕구민대상』수상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시상부문

부 문	공 적 내 용
지역발전	지역주민에 앞장서서 지역개발과 발전, 봉사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자
사회복지	각종 사회복지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및 봉사 등 나눔의 실천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
지역경제	관내 경제 활성화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헌신한 자
도시환경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공헌한 자
교육문화체육	교육,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자

2. 시상인원: 부문별 1명

3. 시상내용: 대덕구청장 상패

4. 추천기준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대덕구 거주 또는 관내 사업체에 종사하는 개인·기관·단체
- 시상 부문별 현저한 공적으로 명예를 선양,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

5. 추천 제외 대상

-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단체)

6. 추천권자: 시상 부문별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동장

7.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26. 7. 31.(금) ~ 8. 28.(금) 18:00까지

나. 구비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반명함판 사진, 그 외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인쇄물, 스크랩 등)

※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에서 추천 양식 다운로드(구청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다. 접 수 처: 대덕구청 자치행정과

라.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8. 2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 자치행정과

8. 수상자 선정: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공적심의를 거쳐 선정(9월 중)

※ 후보자가 없거나, 공적이 미흡한 부문은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9. 시 상 일: 2026. 10월 중

10. 기 타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자치행정과 (☎608-6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